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종합의견서(1회)

1. 일반현황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명	하남선(5호선연장) 궤도공사(1공구)				
계약방법	장기계속공사		계약자	천운궤도 주식회사	낙찰률			
기술부서	도시철도 토목부		담당자	주무관 최경호	전화 : 02-772-7245	팩스 :		
계약현황	총 공사 계약 현황 (부기 금액)				진행 중인 공사 계약 현황(1차공사)			
	계약일	2017년08월29일	계약금액	5,799,448,000 원	계약일	2017년08월29일	계약금액	267,400,000 원
	착공일	2017년09월01일	준공예정일	2018년12월31일	착공일	2017년09월01일	준공예정일	2017년 12월 31일
물가변동 조정현황	조 정 횟 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조 정 방 법	지수조정						
	조 정 기 준 일	2018년01월01일						
	조 정 율	4.49 %						
	조 정 금 액	193,218,000 원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용								
물가변동 조정율 [A]	4.49 %	물가변동 경과기간	124 일	입찰일(기준시점) : 2017년 08월 18일				
				계약체결일(기준시점) : 2017년 08월 29일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2018년 01월 01일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B]		5,799,448,000 원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현재의 공정율		예정공정율 : 25.02 % 실행공정율 : 5.47 %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C]		1,496,135,000 원		물가변동 적용대가 [D] (D = B - C)		4,303,313,000 원		
선금급 공제금액 [F]				물가변동 등락금액 [E] (E = D × A)		193,218,000 원		
기타 공제금액 [G]				물가변동 조정금액 [H] (E - F - G)		193,218,000 원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첨부서류								
번호	첨부 서류명				부수	비고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총괄표					붙임 2 참조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산출근거					붙임 3~11 참조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참고자료 및 필수제출자료					붙임 12,13 참조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종합의견								
<p>1. 위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첨부자료의 프로그램 내용은 계약당시 (직전 물가변동 조정 당시)의 물가변동 기초자료의 내용과 부합됨을 확인하였으며, 물가변동자료의 오류·변조·위조·불일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발생 되는 모든 문제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에서 책임을 질 것이며,</p> <p>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와 계약예규 등 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율을 검토한 바, 3%이상 상승하였으며,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도 90일 이상 경과한 것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귀청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p>								
2018. 07.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인)								